

제241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9.6.24.)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제출자 : 2019. 5. 30./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19. 5. 31.
- 상정일자 : 제24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 6. 21 상정·의결)

2. 제안이유 및 골자

가.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이은주 재무과장, 박종권 수도
사업소장, 유태정 기획예산담당관)

-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른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1) 세입·세출 결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결산액 (A)	세 출 결산액 (B)	결산상 잉여금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속 비 이 월	보 조 금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계	760,510	452,643	307,867	55,747	28,478	12,773	4,347	206,522
일반회계	685,158	415,063	270,095	53,322	25,237	12,773	4,300	174,463
특별회계	75,352	37,580	37,772	2,425	3,241		47	32,059

-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 총괄은
 - 수납액은 760,510백만원이며, 지출액은 452,643백만원으로
 - 결산상 잉여금은 307,867백만원임.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은 55,747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28,478백만원이고
- 계속비이월은 12,773백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4,34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순세계 잉여금은 206,522백만원임.

2)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비율(%)	
						C/A	C/B
계	762,499	765,091	760,510	1,389	3,192	99.7	99.4
일반회계	688,580	689,160	685,158	1,376	2,626	99.5	99.4
특별회계	73,919	75,931	75,352	13	566	101.9	99.2

○ 2018년도 실제 수납액은 760,510백만원으로서

- 징수결정액 대비 99.4%이며,
- 미수납액 3,192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4%임.

3)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액 (F)	보조금 반납금 (G)	집행잔액 H=C-E-F-G
계	679,027	83,472	762,499	452,643	104,426	3,257	202,173
일반회계	613,495	75,085	688,580	415,063	98,760	3,210	171,547
특별회계	65,532	8,387	73,919	37,580	5,666	47	30,626

○ 2018년도 총지출액은 452,643백만원으로서

- 예산현액 762,499백만원 대비 59.3%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426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3.7%이며
- 집행잔액 202,173백만원은 예산현액의 26.5%임.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

- 이 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 전 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 용 금 액		비 고
		감 액	증 액	
13건	10,059	259	259	

심 사 의 견

- 예산 집행은 당초 예산 편성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법하지만 여건 변화, 사업의 일부변경 등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경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에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군정홍보 및 광고, 공무원 역량강화, 재해구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주민편익사업 추진, 주거급여,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과수 품질 향상, 영농현장연구,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전용한 것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 체(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

5) 계속비 결산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당 해 연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 잔액
합 계	34,222	13,693	20,522	7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	1,997	1,060	937	
거창 향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2,043	541	1,502	
거창 치유의 숲 조성사업	2,580	1,196	1,377	7
거창 향노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46	46		
덧시골 폭포 등산로 연결사업	2,129	1,885	244	
거창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100	44	56	
대산지구농촌테마공원 조성	198	198		
기초생활인프라(소규모 용수개발)	2,867	2,003	864	
농촌중심지활성화(선도지구)	1,219	527	692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15,117	3,478	11,639	
권역 단위 종합 개발	2,757	1,039	1,718	
마을단위경제(체험소득)	506	313	193	
마을단위환경(경관생태)	922	787	135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	578	457	121	
시군창의	677	69	608	
취약지구개조(궁항지구)	486	50	436	

심 사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조성사업 등 총 16건의 계속사업비 이월 내역은 모두 타당함.

6) 예비비 지출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합 계			896,600	465,199	359,365	72,036
건 설 과	농업생산기반시설	한밭대비 용수개발	20,000	19,606		394
	농업생산기반시설	한밭대비 용수개발	5,500	5,500		
	농업생산기반시설	한밭대비 용수개발	15,000	15,000		
	도 로 관 리	도로유지관리	6,000	4,730		1,270
농업기술센터	축산업육성	가축 사육환경 개선	276,000	236,606	39,394	
	축산업육성	가축 사육환경 개선	194,100		162,471	31,629
	원예특작생산기반조성	원예특작 안정생산	40,000	40,000		
	과수산업생산기반조성	과수 품질 향상	165,000	126,257		38,743
	과수산업생산기반조성	과수 품질 향상	175,000	17,500	157,500	

심 사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가뭄으로 인한 뚝방설치와 지산지구 용수개발사업은 농가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관정개발 사업임.
- 농업기술센터 가축 사육환경 개선 사업은 7월 폭염에 따른 축사시설 선풍기, 환풍기, 동력분무기, 에어컨 등 추가 지원 사업이었으며, 원예특작 안정생산 사업은 폭염 장기화에 따른 이동식 스프링클러 지원, 과수 품질 향상 사업은 폭염에 따른 시설포도원 공기배출용 환풍기 지원과 가뭄대비 과수원 관정 지원 사업으로 재정집행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로 예비비 집행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지만
- 긴급 목적 달성을 위해 편성된 사업비가 조기에 지출되어 목적을 달성하고, 사업비가 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7) 다음연도 이월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계	313	303,571	104,425	
명 시 이 월	109	139,728	56,631	
사 고 이 월	177	135,270	28,650	
계속비이월	27	28,573	19,144	

심 사 의 견

-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사업기간 부족, 사전절차 이행,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위치 미확정,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됨.
- 이월 사유와 이월 금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사례로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집행을 위한 효율적인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이 필요함.

8) 기금결산

(단위 :천원)

구 분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㉒)=㉑-㉔	조 성 액(㉑)	사 용 액(㉔)	
계(7종)	12,878,560	254,955	864,969	610,014	13,133,516
식 품 진 흥 기 금	66,506	17,812	25,072	7,260	84,318
중소기업육성기금	6,560,226	-13,012	91,795	104,807	6,547,214
사 회 복 지 기 금	3,376,363	112,309	161,199	48,890	3,488,672
재 난 관 리 기 금	1,026,850	119,447	540,753	421,307	1,146,297
아림예술제진흥기금	500,447	7	7,007	7,000	500,454
옥외광고정비기금	260,279	23,058	23,808	750	283,337
체 육 진 흥 기 금	1,087,889	-4,665	15,335	20,000	1,083,224

심 사 의 견

- 2018년 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 조성액은 13,133,516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64,969천원이고, 사용액은 610,014천원으로 전년대비 254,955천원이 증가되었음.
- 기금은 조성보다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식품진흥기금, 아림예술제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집행이 미미하므로 향후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함.

9) 채권액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연 도 발 생 액	당 해 연 도 소 멸 액	당해연도말 잔 액
합 계		4,890,180	58,870	1,065,421	3,883,629
일반회계	소 계	4,488,827	40,474	880,474	3,648,827
	전화선예치금	12,474	-	12,474	0
	학자대여금	4,343,353	12,474	868,000	3,487,827
	회 원 권	133,000	-	-	133,000
	주택융자금	-	28,000	-	28,000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5,250	-	5,250	0
기금	사회복지기금	396,103	18,396	179,697	234,802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심 사 의 견

- 전년도 말 잔액은 4,890,180천원으로 당해 연도에 58,870천원이 발생하고, 1,065,421천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883,629천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을 보면 기금채권 234,802천원, 보증금채권 133,000천원, 융자금 채권 3,515,827천원으로 보증금채권은 회원권이고, 융자금채권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및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임.

10) 채무액 결산

- 거창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도부터 채무 제로화를 달성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0원임.

11) 보조금 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131,790,189 (99,681,894)	129,534,677 (98,872,031)	113,094,408 (63,166,852)	12,846,002 (32,271,817)	3,594,267 (3,433,362)	
일 반 회 계	125,706,840 (98,170,172)	123,451,328 (97,360,309)	107,887,417 (61,924,618)	12,010,245 (32,024,487)	3,553,666 (3,411,204)	
특별 회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30,000 (1,955)	30,000 (1,955)	30,000 (1,954)	- -	- (1)
	의료보호기금	185,271 (46,318)	185,271 (46,318)	161,226 (40,306)	- +	24,045 (6,012)
	산업단지조성사업	233,300 (1,457,700)	233,300 (1,457,700)	28,550 (1,194,881)	200,000 (247,330)	4,750 (15,489)
	수질개선	5,634,778 (5,749)	5,634,778 (5,749)	4,987,215 (5,093)	635,757 -	11,806 (656)

※ 군비부담액은 98,872,031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76.3%에 해당함

※ ()내서는 군비 부담액임.

심 사 의 견

- 2018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29,534,677천원으로 예산액 131,790,189천원 대비 98.3%이고, 집행액은 113,094,408천원으로 예산액의 85.8%이며, 112,846,002천원이 이월되었음
- 일반회계 군비부담액은 97,360,309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비하여 78.8%에 해당됨.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8년말 조 성 액 ①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2019년도말 조 성 액 ④=①+②-③	증 감 ⑤=④-①	
		수 입 ②	지 출 ③			
합계(8개)	12,816,310	100,805,797	695,550	112,926,557	100,110,247	
총 무 위 원 회	재정안정 화적립금	0	100,000,000	0	100,000,000	100,000,000
	식품진흥 기금	77,506	26,310	15,110	88,706	11,200
	중소기업 육성기금	6,416,976	107,100	210,000	6,314,076	△102,900
	사회복지 기금	3,362,582	176,726	106,000	3,433,308	70,726
	아름예술제 진흥기금	500,452	6,444	6,400	500,496	44
	체육진흥 기금	1,084,206	17,871	20,000	1,082,077	△2,129
산업건설 위 원 회	재난관리 기금	1,092,362	445,000	329,440	1,207,922	115,560
	옥외광고 발전기금	282,226	26,346	8,600	299,972	17,746

2) 재정안정화적립금 변경안

(단위:천원)

수입변경계획				지출변경계획			
항목	당초 수입액	변경 수입액	증감	항목	당초 지출액	변경 지출액	증감
합 계	0	100,000,000	100,000,000	합 계	0	100,000,000	100,000,000
전입금	0	100,000,000	100,000,000	비용자성 사업비	0		
예치금 회수	0		0	예치금	0	100,000,000	100,000,000

3.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4. 토론요지 : 해당없음

5.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